

●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세칙(050101)

제정 1997. 12. 1. 시행세칙 제 8호
개정 2003. 3. 13. 시행세칙 제 89호
개정 2007. 3. 28. 시행세칙 제213호
개정 2009. 11. 20. 시행세칙 제291호
개정 2009. 12. 30. 시행세칙 제293호
개정 2021. 12. 29. 시행세칙 제599호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회계규정 제11조 및 인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.)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07.3.28>

제2조(징원) 이 세칙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. <개정 07.3.28>

1. 경리관, 분임경리관, 정수관, 분임정수관, 지출원, 수입원, 총괄채권채무관리관, 분임채권채무관리관, 채권채무관리원,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취급원, 일상경비출납원
2. 총괄재산관리담당, 재산관리담당, 분임재산관리담당
3. 물품관리담당, 분임물품관리담당, 물품출납원, 분임물품출납원
4. 전항 제1호 내지 제3조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
5.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된 자 이외의 회계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(재정보증) ① 직원이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회계직으로 임명되는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사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한다.

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제3조 제2항의 보험에 의한 재

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상업무에 해당하는자는 3억원 <개정 21.12.29.>
2. 공급(분양·임대), 전세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취득업무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<개정 09.11.20, 21.12.29.>
3. 재산,물품,지출,자금,계약업무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<신설 09.12.30, 21.12.29.>
4.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<신설 21.12.29.>

제5조(회계직의 겸직) 제2조의 회계관계 직원이 다른 회계직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,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사장은 회계관계직원 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,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회계직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및 보관) 사장은 회계관계

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원으로 하여금 회계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

부 칙<97. 12. 1>

이 시행세칙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03. 3. 13>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07. 3. 28>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09. 11. 20>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09. 12. 30>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1. 12. 29.>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